

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년 2월 16일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2월 6일, 운영희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2월 6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3년 2월 16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기준과 금액을 확대함으로써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장애인가정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지원 대상 확대 및 단서 조항을 신설함(안 제3조).
출산일 기준 1년 전 주민등록 → 6개월 전 주민등록 다만,
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이상 경과 시 지원
- 지원 기준 및 출산지원금을 변경함(안 제4조).

부 또는 모가 장애인 : 50만 원		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: 150만 원
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: 100만 원	→	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: 100만 원

3. 관계법령

- 관련법령 : 「장애인복지법」 제9조, 제30조
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4조, 제10조
-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- 입법예고 : 2023. 2. 7. ~ 2. 13.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개정 이유

본 개정안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의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을 확대하여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시대의 사회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의원발의 됨.

다. 주요 내용

- 1) 지원 대상 확대 및 단서 조항을 신설함(안 제3조)
출산일 기준 1년 전 주민등록으로 하는 기준을 6개월 전 주민등록 기준으로 완화함
- 2) 지원 기준 및 출산지원금을 변경함(안 제4조)

부 또는 모가 장애인
: 50만 원
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
: 100만 원

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: 150만 원
→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
: 100만 원

라. 검토의견

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의 지원 확대를 통하여 출산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개정조례안은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□ 금천구 지원 실적

(단위 : 명, 천원)

연도별	지원 인원	장애 정도		지원액		전년 대비 증가율
		심한 장애	심하지 않은 장애	국시비	구비	
합계	18	7	11	18,000	5,000	
2020	3	1	2	3,000	-	-
2021	6	4	2	6,000	-	100%
2022	9	2	7	9,000	5,000*	50%

□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조례 제정 현황

연번	자치구	출산지원금 기준 및 규모		시행 여부
		기준	금액 규모	
1	강 남 구	출생일 기준 1년 전 주민등록, 1년 미만 시 1년 경과 시	1.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: 100만원 2.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: 70만원	○
2	강 동 구	출생일 기준 1년 전 주민등록, 1년 미만 시 1년 경과 시	1.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: 100만원 2.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: 50만원	X

3	관악구	출생일 기준 1년 전 주민등록	1.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: 100만원 2.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: 50만원	X
4	광진구	출생일 기준 1년 전 주민등록	신생아 1명당 50만원	O
5	노원구	출생일 기준 1년 전 주민등록	신생아 1명당 100만원	X
6	도봉구	출생일 기준 6개월 전 주민등록	1. 모가 장애인 : 150만원 2. 부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: 150만원	O
7	동대문구	출생일 기준 주민등록	1.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: 150만원 2.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: 100만원	O
8	서초구	출생일 기준 365일 전 주민등록	1. 심한 장애 : 150만원 이내 2. 심하지 않은 장애 : 120만원 이내	O
9	성북구	출생일 기준 1년 전 주민등록	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: 50만원	O
10	양천구	출생일 기준 6개월 전 주민등록	신생아 1명당 50만원	O
11	영등포구	출생일 기준 1년 전 주민등록, 1년 미만 시 1년 경과 시	신생아 1명당 50만원	O
12	용산구	출생일 기준 3개월 전 주민등록, 3개월 미만 시 3개월 경과 시	1.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: 150만원 2.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: 100만원	O
13	은평구	출생일 기준 1년 전 주민등록	1.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: 150만원 2.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: 100만원	O
14	종로구	출생일 기준 10개월 전 주민등록	1. 부가 장애인인 경우 가.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: 150만원 나.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: 100만원 2. 모가 장애인인 경우 가.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: 150만원 나.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: 100만원	O

15	중 구	출생일 기준 6개월 전 주민등록	1.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: 150만원 2.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: 100만원	○
16	중 량 구	출생일 기준 1년 전 주민등록, 1년 미만 시 1년 경과 시	신생아 1명당 50만원	○

※ 조례 신설한 16개 자치구 중 3개 출산지원금 사업 미시행(강동구, 관악구, 노원구)

※ 강북구, 강서구, 구로구, 동작구, 마포구, 송파구, 서대문구, 중랑구 등 8개 자치구 조례 미 제정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